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정혜경 · 최혁진 · 전종덕
윤종오 · 손 솔 · 용혜인
한창민 · 서미화 · 김준형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

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,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「근로기준법」상의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,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의 파견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.

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,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유공자·장애인·고령자 등 고용 의무 배제 규정을 삭제함(제17조제1항 삭제).
- 나. 무급휴일 허용 특례를 삭제함(제17조제4항 삭제).
- 다.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확대 특례를 삭제함(제17조제5항 삭제).

법 른 제 호

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일 부 개 정 법 른 안

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
정 한다.

제 17 조 제 1 항 · 제 4 항 및 제 5 항 을 각 각 삭 제 한다.

부 칙

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) <u>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9조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 및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<u>②·③ (생략)</u> <u>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.</u> <u>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</u>	제17조(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) <u><삭 제></u> <u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
<u>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 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